

# 연수 서해그랑블 에듀파크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1 공급 개요 및 일정

-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동춘2구역도시개발사업 1-1블록
- 공급 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23층 12개동 총 64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 개요

(단위: m<sup>2</sup>)

구분	주택형 (약식표기)	세대별 계약면적(m <sup>2</sup> )					공급세대수	입주예정시기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주차장포함)	계약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민영 주택	74A	74.3680	21.8450	96.2130	41.7710	137.9840	78	2023년 11월 (예정)
	74B	74.4230	22.0560	96.4790	41.8010	138.2800	88	
	74C	74.5540	21.8980	96.4520	41.8750	138.3270	80	
	84	84.8960	24.5170	109.4130	47.6840	157.0970	391	
	112	112.4620	34.4430	146.9050	63.1670	210.0720	3	
	118	118.7100	35.6370	154.3470	66.6760	221.0230	1	

※ 상기내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 여주시청의 승인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관추천 유형별 배정세대 내역(전용 85m<sup>2</sup>이하 주택 건설량 10%범위)

(단위:세대)

구분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세대(예비입주자)				
		74A	74B	74C	84	계
국가유공자		1(5)	1(5)	1(5)	4(20)	7(35)
장기복무 제대군인		1(5)	1(5)	1(5)	4(20)	7(35)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0	1(5)	1(5)	4(20)	6(30)
중소기업 근로자		1(5)	1(5)	1(5)	6(30)	9(35)
장애인	인천	1(5)	1(5)	1(5)	10(50)	13(65)
	서울	1(5)	1(5)	1(5)	5(25)	8(40)
	경기	1(5)	1(5)	1(5)	5(25)	8(40)
합계		6(30)	7(35)	7(35)	38(190)	58(280)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주택형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접수 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분양일정

구분	일자	참고사항
입주자 모집공고(예정)	2021.04.29.(목)	일간신문 및 연수 서해그랑블 에듀파크 홈페이지( <a href="http://www.dc1seohai.co.kr">http://www.dc1seohai.co.kr</a> )
건본주택 개관(예정)	2021.04.30.(금)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13-5번지 연수 서해그랑블에듀파크 건본주택 ※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 건본주택으로 운영될 수 있음)
특별공급 접수일시(예정)	2021.05.10.(월)	인터넷 청약접수(08:00~17:30) 청약홈( <a href="https://www.applyhome.co.kr">https://www.applyhome.co.kr</a> ) 사이트 통한 청약 접수 ※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예정)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2021.05.18.(화)	한국부동산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홈( <a href="https://www.applyhome.co.kr">https://www.applyhome.co.kr</a> ) 또는 청약홈 앱에서 조회가능

- ※ 상기일정은 업무 추진 중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 한해 건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10:00 ~ 14:00 / 공인인증서 필히 지참, 은행창구 접수 불가 / 방문주소는 아래의 자료를 참고 바람)

## 2 | 특별공급 자격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85㎡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정의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단,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유주택이어도 청약가능.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5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과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은 자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한차례1세대 1주택에 한하여 공급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청약홈) 신청하여야 하며, 미 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 및 계약 불가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 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첨부되는 제출서류가 허위서류로 판명될 경우 청약 당첨 후에 계약을 하여도 계약 취소 사유가 되며,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사이버 견본주택 포함) 또는 견본주택 대표번호(1833-4112)로 문의주셔서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밖에 기타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릅니다.